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8-082호 (사건번호 : 2021조총0068)

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5. 10.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내용 및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1.8.23.)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대행업체 정보 관리를 위해 '21. 10. 6.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	수집·이용 항목	수집기간	보유건수(명)
(대행업체 정보 관리시스템)	(필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주소, 업체 아이디·비밀번호 (선택) 대표자 휴대폰 번호 대표자 이메일	'08.10.13. ~ 계속	4,394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대행업체 대표자 3,15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대표자 휴 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시		유출 인지·대응 내용					
2021.	8.18.	통해 유출 사실 인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8.2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유출 신고 /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					
	8.24.	홈페이지에 유출사실 공개 / 데이터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파기 요청 메일 발송					
	8.25.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사실 조회 서비스 제공					
	9. 6.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9.28.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정					
	9.29.	신규 등록 절차 강화(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절차 추가)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보관·관리중인 대행업체 정보 중 일부를 '14. 8. 12 부터 에 등록·연동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당초 자체 계획(

)에 따라 대표자 성명,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 업체 주소 등 4개 항목만 공개하려 하였으나, 최초 항목 등록시 원인 미상의 사유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2개 항목이 추가 포함되어 공개되었으며, 일부 사용자가 을 통해 획득한 해당 정보(2,813건)를 자신의 웹사이트(기회쇄)에 API 연동 형태로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x27;14. 8. 12. ~ '21. 8. 18. 을 통해 105명이 해당 정보를 신청·활용하였으며, 총 124,603건의 대행업체 정보를 조회함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당초 계획된 법인정보 4가지 외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개인정보가 공개 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통제하지 않은 결과, '14. 8. 12. ~ '21. 8. 18. 을 통해 대행업체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으며, 105명의 사용자가 이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4. 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4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14.8.12. ~ '21.8.18. 을 통해 대행업체 대표자 개인정보를 등록·연동하여 공개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1회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ਜਦਰਜ	근기 답으는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3. 8.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인 60만 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 가중기준(제8조 관련) >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위반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의
기간	다 되면 중대의 기산이 3개월 이중한 중구	50% 이내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의견제출 기간내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자료제출 등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별표1] 감경기준에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조사 협조·	1.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자진 시정 등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75조제2항제6호	600	60	300	360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은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제정) 제2조(공표요건)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 처분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2023 5. 10. 과태료 36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2023년 5월 10일 개 인 정 보 보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5월 10일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